

보상금 [] 일부 지급결정 통지서
[] 전부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보상 결정 사항	보상원인	
	보상금액(신청금액)	
	보상방법	
그 밖의 사항		

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·제6항·제9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※ 문의 전화번호:

합동참모의장,
각군 참모총장
또는
해병대사령관

직인